

제6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1. 11. 30.(수)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민의례

③ 개회선언

④ 회의공개여부 결정

⑤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6 의결사항

가. 서면결의 대상 안건 확대에 관한 건 - (2011-67-310)

- 백기훈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회 상정 안건 중 일상적·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안건인 11개 사항을 서면결의 대상 안건으로 추가하기 위해 마련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서면결의 대상 안건으로 추가된 11개 사항 >

- ① 국화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제출 의결
- ②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법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안건
- ③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의 내부 또는 산하기관 위임에 따른 관련 규칙·고시 폐지 안건
- ④ 타 정부부처 주관으로 제개정되는 규칙·고시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항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
- 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및 공익채널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본계획으로서 기존계획과 내용 차이가 거의 없는 안건
※ 단, 방송통신위원회 임기별로 최초로 의결하는 방송사 종류별 심사기본계획은 대면회의에 상정
- ⑥ 방송사 대표자·편성책임자·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 및 편성책임자 공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⑦ 방송심의 관련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⑧ 서비스 이용자가 없는 기간통신사업 폐지 승인
- ⑨ 심사절차 간소화 대상인 소규모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주식소유·사업양수 및 법인 합병 등의 인가
- ⑩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청구금액 1천만원 이하 소액 재정사건에 대한 결정
- ⑪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종교·자선·기타 국제적 친선 목적의 외국자본 출연 승인
※ 단, 최초로 외국자본 출연을 받고자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승인여부는 대면회의에 상정

나. (주)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 (2011-67-311)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15조의2에 의거, (주)호반이 신청한 (주)광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조건을 부과하고 승인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승인조건 >

- ① (주)광주방송 경영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와 의견청취 시 약속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
 - 신임 대표이사(사장)의 방송전문경영인 선임,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등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주총회 이후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 ② (주)광주방송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주)호반(특수관계자 포함)과 (주)광주방송 간의 내부거래를 금지할 것

< (주)광주방송 최대액출자자 주식변동 내용 >

변경 전			변경 후		
주주명	주식수 (주)	지분율 (%)	주주명	주식수 (주)	지분율 (%)
(주)력키산업	2,598,000	32.48	(주)호반	2,367,000	29.59
(주)력키산업	1,300,000	16.25	(주)호반	1,167,000	14.59
박흥석	1,103,000	13.79	호반 베르디움(주)	1,040,000	13.00
박흥남	133,000	1.66	베르디움(주)	160,000	2.00
박상우	62,000	0.78	-	-	-

※ 최대액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광주방송의 2대 주주는 박흥석임(10.4%, 835,000주)

다. 지상파 HD방송 송출중단에 대한 지상파방송사·종합유선방송사 양측 의견청취(안)에 관한 건 - (2011-67-312)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상파 HD방송 중단으로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여 방송법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지상파방송 3개사, 종합유선방송 93개사)을 하기에 앞서, 원안대로 차기회의에서 양측 협상대표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기로 의결함

7. 보고사항

가. 2010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안)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2010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이상학 통신정책국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내용

① 경쟁상황평가 개요

- (목적) 정부의 사전규제가 필요한 시장과 규제 대상사업자의 식별 및 규제의 종류·정도 등의 결정을 위한 시장상황을 판단
- (활용)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 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등 관련 고시 개정예 반영하고, 아울러 M&A 등 인·허가정책 및 경쟁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② 경쟁상황 평가결과

I. 유선전화	경쟁상황	주요 평가 의견
① 시내전화	비경쟁	○ KT 시장점유율 : 매출액 90.8%, 가입자 86.3% ○ 가입자망 필수설비 성격에 따른 진입장벽이 존재 ⇒ KT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유지 필요

②시외전화	비경쟁	○ KT 시장점유율 : 매출액 81.2%, 가입자 82.2% ○ 진입장벽이 낮고, 매출액 및 가입자 점유율 감소 추세 ⇒ KT의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약함
③인터넷전화	경쟁	○ LGU+ 시장점유율 : 매출액 32.5%, 가입자 30.2% ○ 진입장벽이 낮고, 요금 및 마케팅경쟁 활발
④국제전화	경쟁	○ SK텔링크 시장점유율 : 매출액의 25.8% ○ 사업자 전환장벽이 낮고, 요금 및 마케팅경쟁 활발
Ⅱ. 이동전화	비경쟁	○ SKT 시장점유율 : 매출액 54.4%, 가입자 50.6% ○ 서비스 품질은 우수하나, 경쟁압력과 시장성파가 미흡 ⇒ SKT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유지 필요
Ⅲ. 초고속 인터넷	경쟁	○ KT 시장점유율 : 매출액 47.4%, 가입자 43.1% ○ 속도 및 품질 측면 기술도입 활발
Ⅳ. 전용회선	경쟁	○ KT 시장점유율 : 39.5%, LGU+ 시장점유율 : 34.9% ○ 속도 및 품질 등에 따른 다양한 상품이 제공

③ 제도 개선방향

- (지배적사업자 고시방법 변경) 전년도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지정·고시하던 지배적사업자를 통신시장 경쟁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에 따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개선
- (경쟁상황 평가 대상 확대)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주요 부가통신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 (자료제출 요구 제도화)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시장 경쟁 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④ 향후 일정

-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등 관련 고시 개정안 위원회 의결 : '11. 12월
-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방안 및 법령 개정 추진 : '12. 1월 ~

나.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설비제공제도 관련 지나치게 엄격한 제공기준의 개선, 절차의 구체화, 관련 용어의 명확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이상학 통신정책국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내용

① 설비제공 기준 개선

㉠ 광케이블 제공 기준 개선 (안 제15조제1항제2호, 제2항제2,3호, 제5항)

- (개정사유) '2004년 이후 구축된 광케이블'(KT 광케이블의 82%)이 제공대상 설비에서 제외되어 설비제공 제도의 의미 반감되고 있으며, 제공사업자가 예비로 남겨둘 수 있는 회선(예비율)이 운용회선의 35%로 과다

- (개정내용) 구축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광케이블은 제공대상에서 제외하고, 예비율을 20%로 축소하여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되, 관로를 제공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케이블 제공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설비투자 유인 보장

㉡ 관로제공 조건 개선 (안 제15조제1항제3,4호, 별표1)

- (개정사유) 관로의 제공범위에 대한 불분명한 표현으로 사업자간 이견
 - ‘인·수공’이 제공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공사업자가 인공수공 벽면을 제공 거부 (‘관로’ 이용대가에 인·수공 구축비용 포함)
- (개정내용) 제공사업자의 케이블 대·개체에 필요한 관로의 적정공간을 허용하고, 설비제공에서 제외되는 관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관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인공 및 수공을 설비제공 대상으로 명시

㉢ 설비제공 거부사유 개선 (안 제16조 제1항제1호, 제4항)

- (개정사유) 이용사업자의 설비가 제공사업자의 자체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설비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 자신도 준수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을 이용사업자에게 적용
- (개정내용) 제공사업자 본인도 준수하지 않는 자체기준은 이용사업자의 설비 제공 요청의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 신설

㉤ 설비관련 제공정보의 명확화 및 정보이용대가 합리화 (안 제17조 제6,7항)

- (개정사유) 제공사업자의 제공정보와 현장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빈발하며, 정보이용대가를 설비위치 파악과 제공가능 여부 파악에 대하여 각각 따로 부과하는 등 과금방식이 비효율적임
- (개정내용) 제공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과금하는 경우 시정명령 근거 마련

㉦ 광케이블 최소이용대가 합리화 (안 부칙 제2조)

- (개정사유) 광케이블은 이용거리와 관계없이 최소 이용대가를 규정하여, 개인고객 대상 서비스를 위해 설비를 제공받는 경우 비용부담이 상당
- (개정내용) 개인고객 서비스를 위한 경우 광케이블 이용대가 최소 산정 구간을 축소 (인입구간 : 100m→50m, 비인입구간 200m→100m)

② 설비제공절차

㉧ 설비제공 업무처리기간 단축 및 신설 (안 제18조 제4항 별표2, 제6항)

- (개정사유) 관로·광케이블의 업무처리기간이 장기(최대 20일)이며, 공동현장실사 기한이 없어 실사가 지연되는 등 적시에 설비를 제공받는데 애로

- (개정내용) 설비 제공 업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공동현장 실사 기간을 요청일로부터 7일로 규정

③ 용어의 명확화 및 보완

㉔ 필수적인 설비, 관로 용어 정의 신설(안 제3조제1항제7호,8호)

- (개정사유) 법령상 ‘필수적인 설비’, ‘관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간 이견 발생
- (개정내용) ‘필수적인 설비’란 ‘이용사업자가 설비제공 요청을 거절당할 경우 서비스 제공비용이 증가하거나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어 그 지역에서 공정한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설비’로 개념 신설
- ‘관로’ 개념은 인상분선관로를 포함하여 명확하게 규정

㉕ 설비 재설계 관련 용어 개선 (안 제23조제1,2항)

- (개정사유) 설비이용대가 산정 기준인 케이블의 ‘운용회선수’란 운용 가능한 회선수를 의미하나, 이를 실제 사용중인 회선으로 오해할 수 있어 용어를 변경
- (개정내용) ‘운용회선수’를 ‘표본전화국의 가입자수’로 개정

㉖ 설비 내용연수 명확화 (안 제28조)

- (개정사유)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전주’와 ‘통신주’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혼란을 야기하며, ‘철탑’의 내용연수가 없어 대가산정 어려움
- (개정내용) ‘통신주’를 ‘전주’로 변경하고, ‘철탑’의 내용연수 40년 규정

④ 향후 일정

- 입법 예고 : '11년 12월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11년 12월
- 위원회 의결 : '12년 1월

Ⅷ 기 타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별도 정하지 않고 추후 결정하기로 함

6. 폐 회 (11:35)